

LA0709003(250103)

삼 성 더 행 복 종 신 보 험 (2 5 0 1) (무 배 당)
[5 년 이 후 사 망 보 험 금 1 0 0 % 형 , 저 해 약 환 급 금 형]

사 업 방 법 서

삼 성 더 행 복 종 신 보 험 (2 5 0 1) (무 배 당)
[5 년 이 후 사 망 보 험 금 1 0 0 % 형 , 저 해 약 환 급 금 형]

1. 보험종목의 명칭

가. 주계약 : 삼성 더행복종신보험(2501)(무배당)

[5년이후사망보험금100%형,저해약환급금형][1형/ 2형]

나. 특약 : 삼성 더행복종신보험(2501)(무배당) 체증정보장특약[1형/ 2형]

(주)보험종목의 명칭은 “삼성 더행복종신보험(2501)(무배당)[5년이후사망보험금100%형,저해약환급금형]” 의 경우 “주계약” 이라 하며, “삼성 더행복종신보험(2501)(무배당) 체증정보장특약” 은 “체증정보장특약” 이라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주계약

보험기간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신	1 형	5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9세	월납
	2 형	7년납	만15세~69세	만15세~70세	
		10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9세	

(주) 1.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5년 이내(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 제2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5년 초과시점부터 종신까지

3.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하여 "보험기간"이라 함

4. 연계약해당일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같다.

나. 체증정보장특약

보험기간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신	1 형	5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9세	월납
	2 형	7년납	만15세~69세	만15세~70세	
		10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9세	

- (주) 1.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피보험자의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2. 제2보험기간 : 피보험자의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하여 "보험기간"이라 함
 4. 상기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해야한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단,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가능]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1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부터 증액서비스 기간 동안 각 증액보험금만큼 주계약 또는 체증정보장특약의 각 사망보험금이 증액된다. 증액보험금이라 함은 증액서비스 재원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증액서비스 기간 중 계약자가 주계약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또는 체증정보장특약 약관 제15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15. 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우에는 증액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

나. 증액서비스 재원 금액은 증액서비스 기간동안 증액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으로서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각 증액서비스 재원 금액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발생한다.

$$\cdot \text{증액서비스 재원 금액} =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times \text{보험료} \\ \times \text{증액서비스 재원 금액 비율}$$

증액서비스 개시일	주계약/ 채증형 보장특약	증액서비스 재원 금액 비율		
		1형	2형	
		5년납	7년납	10년납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주계약	98.0% - 환급률	100.0% - 환급률	22.0%
	채증형 보장특약	98.0% - 환급률	100.0% - 환급률	33.2%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주계약	17.0% - (98% - 환급률)	22.0% - (100% - 환급률)	-
	채증형 보장특약	27% - (98% - 환급률)	27% - (100% - 환급률)	-

(주) 1. 증액서비스 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및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단,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은 1형을 가입한 경우 또는 2형의 7년납을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환급률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 ÷ (12 ×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 보험료)"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은 증액서비스의 해약환급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3. 다만, 계약일부터 증액서비스 개시일 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직전 월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증액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으며,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증액서비스가 개시된다.

라. “다” 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발생하는 금액은 증액서비스 재원 금액이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마. 증액서비스 기간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에 따라 증액서비스가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개시되는 경우에 증액서비스 기간은 연체보험료 납입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한다.

14.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은 해약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단, 1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8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의 전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보다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나.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한다.

다. '가.'의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

라.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15.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당시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이 계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45세 이상 90세 이하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 (3)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당시 계약자적립액[단, 체증정보장특약의 계약자적립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4)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다.
- (2)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 동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매년 감액할 금액으로 정하고, 매년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여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으로 지급한다.

$$\text{매년 보험가입금액 감액금액} = \frac{\text{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text{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은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월 계약해당일을 말함)에 지급된다.
- (4)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3)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매월(12개월 동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이후 매월 돌아오는 월 계약해당일을 말함)에 지급할 수 있다.
- (5)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는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4)에 따라 매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하던 중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하여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월 계약해당일(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6)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때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는 종료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4)에 따라 매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시점에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 기타 사항

- (1) 신청일 이후부터 마지막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까지 “사업방법서 12.”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계약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또는 체증정보장특약 약관 제15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없다.
- (2)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시 체증정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비율로만 감액되며, 주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16. 기타

가. 사망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주계약

- ①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제1보험기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차년도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0%, 이후 매년(보험연도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5%로 정액 체증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보험기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②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③ 증액서비스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에서 정한 보험금에 각 증액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④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1보험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 수준이 다를 것을 안내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체증형보장특약

- ①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와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80%를 합한 금액을 「제1보험기간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의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 및 소정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②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③ 증액서비스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②에서 정한 보험금에 각 증액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④ ①~②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차감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⑤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 수준이 다를 것을 안내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사망시 보험금 지급의 특례조치

(1) 주계약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1)’에서 정한 해당보험금과 주계약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에서 정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한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중 증액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증액서비스 재원 적립액을 ②에서 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체증정보장특약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2)’에서 정한 해당보험금과 특약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제1호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시 ①에서 정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중 증액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증액서비스 재원 적립액을 ②에서 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 표준미달체 인수 및 요율적용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의적심사 메뉴얼(Medical Guideline)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초과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지수(α)를 결정하며, 표준체인 피보험자의 위험지수(α)는 100으로 한다.
-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위험지수(α) 100 초과 300 이하인 표준미달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피보험자가 표준체인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 (3)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위험지수(α) 300을 초과하는 표준미달체인 경우에는 이 계약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이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 포함)이 제한된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 험 증 권 의 서 식

(별첨 제2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별첨 제3호)

부 활 (효 력 회 복)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